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Fire and Evacuation Safety of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between Korea and Japan

재난약자시설의 화재사례분석 및 피난안전대책에 관한 한·일 국제세미나

9 May , 2017

PRUGIO Valley Theatre , Seoul, Korea



Hosted by



사단
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안실련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TECHNICAL PROGRAM

Date : 2017. 05. 09(Tuesday)

TIME	SUBJECT
09:30-10:00	인사말씀
10:00-10:40	고령자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관한 중대한 화재사례와 일본법령의 대응과 변천 —건축법과 소방법— 발표자 : 동경이과대학 Kyoichi Kobayashi교수
10:40-11:00	고령자 시설과 장애인 시설에 관한 주요 화재사례와 한국법령의대응변천 발표자 : 한밭대학교 이영재 교수
11:00-12:30	고령자 복지시설의 야간화재시의 대응방안 발표자 : 동경이과대학 Kyoichi Kobayashi교수
12:30-14:00	점심식사
14:00-15:00	FIG의 진행방법 발표자 : 일본방화기술자협회 Tomi Matsu
15:00-15:20	소프트대책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방안 발표자 : 소방안전협회 김용철 박사
15:20-16:00	노인 복지시설에서의방화 · 피난 안전 정보의 설계자와 사용자와 공유의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일본고베대학 Ohnishi Kazuyoshi교수
16:00-16:10	Coffe Break
16:10-16:50	일본 노인 복지 시설의 방화 · 피난 연구 — 직원의 불안에 관련된 설문 분석 결과— 발표자 : 일본소방검정협회 Kuriokah hitoshi
16:50-17:10	고령자시설의 화재안전 및 피난안전 가이드라인을 위한 활동 상황 정리와 향후 계획 발표자 : 호서대학교 권영진교수
17:10-17:30	질의응답 및 폐회

**고령자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관한 중대한
화재사례와 일본법령의 대응과 변천
[건축법과 소방법]**

Prof. Kyoichi Kobayashi
<Tokyo Science Univ.>

高齢者施設と障害者施設に 関する重大な火災事例と 日本の法律の対応の変遷 (建築基準法と消防法)

- 東京理科大学大学院国際火災科学研究科
- 教授 小林 恭一 博士(工学)

고령자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관한 중대한 화재사례와 일본 법률의 대응변천 (건축기준법과 소방법)

東京理科大学大学院国際火災科学研究科
教授 小林 恭一 博士(工学)

講演要旨

- 高齢者福祉施設に関する建築基準法と消防法令の規制の考え方と特徴
- 高齢者福祉施設の火災とそれに対応した規制強化の歴史

강연개요

- 고령자복지시설에 관한 건축기준법과 소방법령의 규제 배경과 특징
- 고령자복지시설의 화재와 그것에 대응한 규제 강화의 역사

법률표 제- (1)란의 (二)항으로 부터 (四)항 까지 또한 (六)항(법제 87조 제3항에서 법제 2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관계하는 용도와 유사한 것으로 정렬으로 정해진 것은 각각 다음의 각호의 나타낸 것으로 한다.

- 방화피난장, 특히 문제가 있는 시설로서 특정되어 있지 않음.
- 건축기준법 별표 제- (2)항
- 병원, 진료소(환자의 수용시설이 있는 것에 한함), 호텔, 여관, 하숙, 공동주택, 기숙사 기타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해진 것
- 건기령 제 115조의 3

고려자본지시서를유출한것을기존법상으로는추적할수없다

一 (二)項の用途に類するもの 児童福祉施設等

法別表第一(イ)欄の(二)項から(四)項まで及び(六)項(法第
八十七條第三項において法第二十七條の規定を準用す
る場合を含む。)に掲げる用途に類するもので政令で定め
るものは、それぞれ次の各号に掲げるものとする。

- ・防火避難上、特に問題のある施設として特出しきれない
- ・建築基準法別表第一(2)項
- ・病院、診療所(患者の収容施設があるものに限る。)ホテル、旅館、下宿、共同住宅、寄宿舎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で政令で定めるもの
- ・建築令第115条の3

高齢者福祉施設等にかかる
建築基準法上の扱い

児童福祉施設等

(学校、病院、児童福祉施設等の居室の採光)

- 建基令第19条
- 法第28条第一項(法第八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の政令で定める建築物は、児童福祉施設、助産所、身体障害者社会参加支援施設(補装具製作施設及び視聴覚障害者情報提供施設を除く。)、保護施設(医療保護施設を除く。)、婦人保護施設、老人福祉施設、有料老人ホーム、母子保健施設、障害者支援施設、地域活動支援センター、福祉ホーム又は障害福祉サービス事業(生活介護、自立訓練、就労移行支援又は就労継続支援を行う事業に限る。)の用に供する施設(以下「児童福祉施設等」という。)とする

7

아동복지시설등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등의 거실의 채광)

건기령 제 19조

- 법 제 28조 제 1항(법제 87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아래에 이 조 및 다음조에서도 동일함.)의 정령으로 정하여진 건축물은 아동복지시설, 조산소, 신체장애자, 사회참가지원시설(보장구 제작시설 및 시청각장애자 정보제공시설을 제외함.) 보호시설(의료보호시설을 제외함.) 부인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홈, 모자보건시설, 장애자지원시설, 지역활동지원센터, 복지홈 또는 장애복지서비스 사업(생활개호, 자립훈련, 취로이행지원 또는 취로 지속지원을 행하는 사업에 한함.)의 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등」이라 칭함.)로 한다.